

충청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9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3. 제 정 이 유

재해발생을 대비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주 요 골 자

가. 기금은 재해구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함.

나.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

다. 기금의 용도는 사망·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이재민 생계구호, 생필품의 급여, 구호비축물자의 구입 등으로 함.

5. 검토 의견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는 재해구호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 기타잡수입으로 운영하며,
- 기금의 용도는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이재민 생계구호, 생활 필수품의 급여, 구호비축 물자구입 등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종전에는 보건사회부의 재해구호지침에 의거 시행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